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권조사 권한 및 위원회 사무국 신설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00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사무국 신설	2
2. 직권조사 권한 및 수사기관 협조 요청 규정 신설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유정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6. 12.

다.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해 예술인권리 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은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고, 사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등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인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사무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행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둔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0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 신고사건 조사에 따른 구제절차 및 구제조치 요청, 시정명령 요청 및 분쟁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함.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예술인보호관¹⁾이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고사실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 등의 구제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²⁾할 수 있고, 예술인권리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제32조(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수사의뢰
 2. 행정처분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³⁾을 할 수 있음.

현행 시행령⁴⁾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의 접수는 「예술인복지법」 제8조⁵⁾에 따라 설치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된 사건의 조사, 분쟁조정 지원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 등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의 조사관⁶⁾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분쟁조정) ① 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2.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의 접수

5) 「예술인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예술인지원팀의 조사관은 총 3인임.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신고사건 접수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사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조사·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사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보다 신속·정확한 권리구제 도모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⁷⁾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등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고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가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봄.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참고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⁸⁾와 같이 자문위원회임에도 사무국을 두고 있는 사례는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⁹⁾,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¹⁰⁾와 같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임.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생략)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9)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10(사무기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사무기구)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2. 직권조사 권한 및 수사기관 협조 요청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 ----- ----- ----- -----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1. 제29조에-----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 ⑤ (생략)	제29조(신고 사실 등의 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⑥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u>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u> <u><신 설></u>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u>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u>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u>참여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술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u>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및 조사절차의 종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 -----<u>제29조에 따른 조사 결과</u>-----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9조¹¹⁾는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7조의 예술인보호관으로 하여금 신고사건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개정안은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어도 그 내용이 중대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보호관이 직권으로 사건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직권 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침해 행위와 관련된 예술인보호관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신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사건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1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유사하게 권리 및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조사기관에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과정에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다르게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조사 인력 및 조직 규모가¹²⁾이 상대적으로 작으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관이 직접 파악해야 하는 직권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의 신고 없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조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직권조사 권한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12) 인권 및 권리침해 조사기구의 조직·인력 현황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조직 형태	재단법인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여부	○	○	○	×
조사업무 조직·인력 현황	1실 2팀	3국 11과	4국 21과	1팀 (조사관 3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1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사건 현황 : 총 313건('24.6월 기준)
-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289건
-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 24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현황>

(단위: 건, '24.6.10. 기준)

신고유형 연도	불공정한 계약 강요 (제13조제1호)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제13조제2호)	예술활동 방해·지사간섭 (제13조제3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제13조제4호)	불이익 계약 강요 (제13조제5호)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제16조)
2022.9.25.~	7	19	5	-	2	5
2023	12	83	10	3	19	6
2024	2	61	2	-	10	9
소계	22	182	19	3	40	24
신고유형 연도	예술의 자유 침해 (제7조)	예술지원사업 차별 (제8조)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제9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제14조)	불이익조치 (제38조)	합계
2022.9.25.~	3	1	1	-	-	43
2023	4	2	3	-	-	178
2024	-	2	3	1	2	92
소계	8	5	7	1	2	313

* 신고인의 신고 당시 신청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사실조사 과정에서 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권리침해 유형 및 관련 조항은 변경될 수 있음.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 '24.6.10. 기준)

사실조사 (위원회 상정 포함)	종결	시정명령	시정권고	분쟁조정	계
185	59	41	5	23	313